

# 신뢰성보험 보상요강

제 정 : 2003. . .

제1차개정 : 2010. 7. 6

##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요강은 신뢰성보험 보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사고조사

**제 2조(사고접수)**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서면으로 사고발생통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어느 담보위험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인지 여부
3. 보험기간내 사고인지 여부
4. 자기부담금(면책기간 포함)을 초과하는 사고인지 여부
5. 보험료정산계약은 아닌 지 여부
6. 보험료(분납보험료를 포함한다)의 납부 여부
7. 사고일시, 사고장소
8. 사고경위, 사고원인
9. 손해상태, 손해정도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사고발생통지서를 접수하면 관련사항을 즉시 한국무역보험공사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한다.

③ 재보험출재건이 사고통지된 경우에는 재보험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향후 진행 사항 등을 협의한다.

**제 3조(사고조사 실시)** ① 제2조 제1항의 사고발생통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자(이하 “손해사정인 등”이라 한다)중에서 단독 또는 복수로 선임하여 사고조사를 의뢰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한다.

1. 신뢰성인증 지정기관(신뢰성 평가기관을 포함한다)
2. 손해사정인
3. 변호사
4. 재보험자
5. 기타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한자

② 제1항의 사고조사는 사고피해의 장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업장 등 현장 출장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사고피해의 장소 등에 대한 출입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장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구두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자체적으로 사고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사고의 규모가 소액 또는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자체적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하거나 사고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4조(손해사정인등의 선임방법)** 국내외 손해사정인등을 선임할 경우에는 부품·소재에 전문화된 손해사정법인등과 업무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손해사정법인과 업무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1종(화재보험과 특종보험의 손해액 사정) 손해사정인을 보유한 법인으로 한다.

**제 5조(사고조사 사항)** 사고조사시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법률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사고발생전 사고발생가능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3.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는 아닌지 여부
4. 사고발생이 보험이 가입대상으로한 보험의 목적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5. 제조물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된 것인지 여부
6. 구체적인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7. 손해상태 및 손해정도
8.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9.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
10. 공동불법행위자는 없는지 여부(구상가능성)
11. 피해자와 피보험자가 한통속은 아닌 지 여부
12. 피보험자와 피해자간에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관계는 없는지 여부
13. 피해자와의 협의내용 및 청구내역
14. 추정손해액
15. 관련법규, 판례의 분석자료
16. 합의 또는 소송가능성
17. 기타 필요한 사항

**제 6조(손해사정인등의 보고)** ① 제3조 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인 등에 사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주기적 또는 수시로 조사결과를 보고받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종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고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고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구체적인 증빙을 포함한다)
2. 약관상 면·부책 해당 여부
3. 배상책임 분석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의 내용
4. 평가손해액
5. 피해자의 기여과실에 대한 의견

6.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 등의 불법행위
7. 관련법규, 판례의 분석자료
8. 피보험자의 방어전략, 방어자료 등
9. 기타 필요한 사항

- 제 7조(조사경비)** 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사정인 등이 사고조사를 행한 경우의 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조사를 행하는 자와의 약정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행하는 자와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의 필요한 경비는 예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제 3 장 손해사정 등

- 제 8조(사고조사결과에의 처리)** 사고조사를 마친후 다음 각호를 심사하여 약관상 면·부책 여부를 판단한다.
1.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2. 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되는 사고인지 여부
  3. 제조물의 결함과 손실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지 여부
  4.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재물(임차,보관,사용등)은 아닌 지 여부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 9조(손해액 사정)** 제8조의 결과에 따라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종 손해액을 산출한다.

### 제 4 장 합의 및 소송

- 제 10조(합의진행)** ① 손해배상금을 산출한 후 손해사정인 등에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피해자간 합의를 요청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직접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합의진행 경과에 따라 손해사정인 등으로부터 아래의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토록 한다.
1. 요구액 및 제시금액
  2. 협상중 양측이 주장한 내용
  3. 제시금액 인상여부에 대한 의견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 11조(합의종결)** ①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 등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 당사자의

자격(본인,법정대리인,상속권자 등), 장애의 클레임에 대한 내용, 구상 또는 피구상과 관련된 내용을 고려한 합의서, 권리포기서 등을 징구한다.

② 재보험출재건으로 피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 동의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재보험자에게 통지토록 한다.

**제 12조(소송진행)** ① 피보험자가 평가손해액에 대한 보험금지급에 동의하지 않거나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으로부터 소제기가 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관련서류 일체와 사고경위 및 방어자료, 주장내용등을 전달하여 응소토록 한다.

②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소제기를 한 경우 즉시 공사에 통보토록 한다.

③ 피해자측으로부터 소제기가 된 경우 피보험자를 약관상 근거에 따라 증인 등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음을 알린다.

④ 소송진행과정에서 선임된 변호사로부터 사건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받는다.

**제 13조(소송결과후 처리)** ① 판결이 선고되면 변호사의견을 바탕으로 판결의 적정성 여부 등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한다.

1. 선임한 변호사가 공사의 요청사항 및 주장내용 등을 성실히 주장하였는지 여부

2. 판결내용(적용법리,사고경위,과실비율,장해율등)이 적정한지 여부

3. 항소시 승소가능성은 있는지 여부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판결에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및 피해자에게 판결금액을 지급한다는 안내를 하고, 재보험 출재건인 경우 이 사항을 재보험자에게 통지한다.

## 제 5 장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제 14조(보험금청구)** ①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가 공사가 평가한 손해액에 대해 동의 또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청구서를 받는다.

② 피보험자 및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청구서를 받으면 그 내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③ 재보험출재건으로 보험금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재보험자앞으로 보험금 청구사유 및 지급보험금 등을 통보한다.

**제 15조(보험금 지급)**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최종 지급보험금을 산정한다.

1. 합의 또는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2. 자기부담금액은 공제하였는지 여부

3. 미납보험료는 없는지 여부

4. 가지급금이 있는지 여부

- 5. 손해액(판결금, 합의금등)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여부
  - 7. 구상권보전비용, 소송비용중 인지대, 변호사비용 및 공탁보증보험료 등이 비례보상대상은 아닌지 여부
  - 8. 잔존물 회수 및 구상을 대비한 서류는 제출되었는지 여부
  - 9.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보험금산정시 자기부담금 공제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손해방지비용, 구상권보전비용 및 소송비용 등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 ③ 분납보험료로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미납입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미납입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 ⑦ 보험금지급시 지급보험금 및 지급내용 등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제 16조(재보험자앞 재보험금청구)** ① 재보험출재건인 경우 보험금지급시 지체없이 재보험자앞으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보험금 및 분담비용청구를 한다.

② 재보험자로부터 재보험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 수령내용 등에 관해 전산입력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 17조(채권서류 징구)** 보험금지급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대위권행사에 필요한 채권관련서류를 징구한다. 단 채권관련 서류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징구한다.

- 1. 국내 공급계약서
- 2. 수출계약서
- 3. 제3자에 대한 구상에 필요한 서류
- 4. 기타 채권행사에 필요한 서류

**제 18조(지급보험금연체시 연체금지급)**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10일이상 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지급한다.

## 제 6 장 채권보전 및 회수

**제 19조(잔존물의 처분)** ①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의 목적인 잔존물에 대해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매각 등 처분한 후 그 금액을 해당사고건에 대한 회수금으로 처리한다. 다만 회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잔존물에 대해 피보험자 등에게 매각을 승인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 1. 잔존물 구매자

2. 잔존물의 수리가능성 및 활용정도
  3. 품질 및 보관상태
  4. 매각단가, 매각금액의 결정방법 등
  5. 결제조건
  6. 매각비용
  7. 기타 필요한사항
- ③ 잔존물의 특성 또는 최선의 매각을 위하여 피보험자 등이 매각후 사후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여부를 심사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잔존물의 매각이 매각비용보다 크거나 또는 매각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 등을 편철하여 잔존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 20조(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대위)** ① 약관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그 권리를 대위취득한다.

- ② 제1항의 대위권 행사를 위해 사고조사시부터 피보험자 등과 협조하여 구상예정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고 관련증인 등을 미리 확보한다.
- ③ 제1항의 대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자에게 구상에 응하도록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 ④ 제4항의 통지내용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의 기한까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동 납부기한과 보험금 지급일중 늦은 날의 익일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변제촉구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제 21조(재산조사 실시)** 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사고접수후 제3자의 불법행위를 안날로부터 지체없이 재산조사를 실시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2조(재산조사의 방법)**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지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재산조사는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제 23조(채권보전조치)** ① 재산조사 결과 제3자에 대한 소유재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구상실익, 회수가액, 환가의 용이성 등을 검토하여 가압류,가처분,기타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한다.

- ② 제1항의 채권보전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반드시 관련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관련서류에 보관한다.
- ③ 채권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채권보전 및 신속한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전에 피보험자 등에게 해당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4조(채권보전조치의 유보)**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보전조치를 유보할 수 있다.

1.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담보취득이 된 경우
2. 제3자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경우. 다만 제3자가 동 약정내용을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채권보전조치를 취한다.

**제 25조(채권보전조치의 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취한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1.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회수된 경우
2. 제3자가 지급보증서, 보험증권 등 제반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된 담보가치가 기존 채권보전조치의 존속가치 이상으로 유리한 경우

**제 26조(연체이율 적용)** 지급보험금 연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강에서 정한 연체금 산정시 적용할 연체이율은 연17%로 한다.

## 제 7 장 보 칙

**제 27조(서식의 제정 및 개폐)**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의 제정,개폐는 이 보험 보상담당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제 2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이 보험 보상담당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